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윤주 의원 대표발의)



**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**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윤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7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2월 25일

발의자 : 경수현, 권영애, 김육영, 박영섭,  
양순임, 오중균, 이용진, 이호건,  
정기혁, 정윤주, 진선아

## 1. 제안이유

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, 범죄예방진단 등 사전 범죄 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·취약지역을,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, 범죄예방 강화구역에서의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적용되도록 개정함(안 제18조제4호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

다. 사전협의 : 건축과

라. 입법예고 : 2026. 3. 3. ~ 2026. 3. 10.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4호 중 “우범지역”을 “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지역”으로, “취약지역”을 “취약지역, 범죄예방 강화구역에서의”로 한다.

제20조제3항제2호나목 중 “서울 성북경찰서 및 종암경찰서”를 “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 경찰서”로 한다.

제33조제2항 중 “성북경찰서, 서울 종암경찰서”를 “성북구 관할경찰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)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우범지역 및 취약지역</u> 도시환경디자인 사업</p> <p>5. ~ 7. (생략)</p> <p>제20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. 이 경우 구청장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</p>	<p>제18조(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지역</u> --- <u>취약지역, 범죄예방 강화구역에서의</u> --</p> <p>---</p> <p>5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도록 해야 하며, 공모 또는 관련기관 추천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.

가. (생략)

나. 서울 성북경찰서 및 종암경찰서 생활안전 담당 부서장 각 1명

다. (생략)

④ (생략)

제33조(협력체계 구축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추진할 경우에는 서울 성북경찰서, 서울 종암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③·④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.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경찰서 -----  
-----

다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협력체계 구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성북구 관할경찰서-----  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# 의원발의 조례안 종합검토 의견서

## 1.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

〈건축과〉

<b>조례안 주요내용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조문변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조문내용 -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·취약지역, 범죄예방 강화구역에서의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적용으로 변경(안 제18조제4호) - “서울 성북경찰서 및 중암경찰서”를 “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 경찰서”로 변경(제20조제3항제2호나목, 제33조제2항)		
<b>관련 법 조 항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		
<b>소요예산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		
<b>부서 검토 체크리스트</b>	검토 항목	검토사항 있다    없다	기타의견
	1. 이미 관련 유사 조례가 있는지?	√	
	2. 발의된 조례안이 행정이나 정책에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?	√	
	3. 사업(정책)집행, 예산, 효과 등에 대한 검토여부?	√	
	4.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?		√
	5.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?		√
	6. 집행기준 및 행정절차 등이 불투명하여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지?		√
	7.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?		√
	8. 기타 법률적 위반사항 등이 있는지?		√
<b>종합 검토의견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대상지 선정 시 사전에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우범지역 및 범죄예방강화구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사업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히 할 수 있음. 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북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을 위한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		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: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, 범죄예방진단 등 사전 범죄예방 중심의 환경 조성을 위한 조문 변경 등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4. 작성자

도시관리국 건축과장 구 필 서